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한 엄격한 환경위생 기준 설정 〉

■ 김기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09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신 문 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한 엄격한 환경위생 기준 설정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기웅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4. 24.
3. 회 부 일 : 2026. 4.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시설에서 오염공기·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등 환경위생과 식품·먹는 물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로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학생들의 건강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학생이나 유해물질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 등이 이용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보다 엄격한 환경위생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한 엄격한 환경위생 기준 설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이 이용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보다 엄격한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의4(학교시설 환경위생에 관한 별도 기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도 불구하고 환경위생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1. <u>오염공기·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이 이용하는 학교시설</u> 2. <u>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시설</u>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기준의 구체적인 항목, 대상, 지역 등 적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검토의견

□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에서 유지·관리해야 할 위생의 종류로 환기·채광·오염공기 등의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학교장에게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¹⁾.

「학교보건법 시행규칙」²⁾에서는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검사 사항과 판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한 예시로 교사 및 급

1)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3의2.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식시설에서의 공기 질 유지·관리 기준은 미세먼지(PM10)는 $75\mu\text{g}/\text{m}^3$ 이하, 초미세먼지(PM2.5)는 $35\mu\text{g}/\text{m}^3$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 기준(「학교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2) >

1.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기준(이하)	적용 시설	비 고
가. 미세먼지	$35\mu\text{g}/\text{m}^3$	교사 및 급식시설	직경 $2.5\mu\text{m}$ 이하 먼지
	$75\mu\text{g}/\text{m}^3$	교사 및 급식시설	직경 $10\mu\text{m}$ 이하 먼지
	$150\mu\text{g}/\text{m}^3$	체육관 및 강당	직경 $10\mu\text{m}$ 이하 먼지
나. 이산화탄소	1,000ppm	교사 및 급식시설	해당 교사 및 급식시설이 기계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주된 환기를 하는 경우 1,500ppm이하
(…)			
더. 스티렌	$300\mu\text{g}/\text{m}^3$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에는 증축 및 개축 포함

2. 관리기준

대상 시설	중 점 관 리 기 준
가. 신축 학교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 시설을 설치할 것 3) 책상·의자 및 상판 등 학교의 비품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것 4)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나. 개교 후 3년 이내인 학교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사. 보건실	낙하세균과 진드기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 기준이 일률적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오염공기·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 물질에 취약한 학생이 이용하는 학교시설과,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기준보다 더 엄격한 환경위생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개인별 환경취약성을 충분히 반영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가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대기환경 악화에 따른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서 적용하려는 엄격한 기준이 실효성을 갖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공기질 유지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어린이·노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미세먼지 등 특정 오염물질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³⁾.

이에 따라 일반적인 다중이용시설은 미세먼지(PM10) $100\mu\text{g}/\text{m}^3$ 이하, 초미세먼지(PM2.5) $50\mu\text{g}/\text{m}^3$ 이하로 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들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관·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미세먼지(PM10) $75\mu\text{g}/\text{m}^3$ 이하, 초미세먼지(PM2.5) $35\mu\text{g}/\text{m}^3$ 이하와 같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한편 「학교보건법」에 따른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은 이미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 중 상향된 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바, 여기에 다시 한 단계 상향된 기준을 추가로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교육부 등의 의견을 참조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비교표 >

구분	학 교 (학교보건법)	어 린 이 집 · 병 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학 원 (실내공기질 관리법)
미 세 먼 지	75	75	100
초 미 세 먼 지	35	35	400
이 산 화 탄 소	1,000	1,000	1,000
폼알데하이드	80	80	100
총 부 유 세 균	800	800	-
일 산 화 탄 소	10	10	10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학생·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서 환경위생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 건강한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학교의 환경위생 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취약시설 공기질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므로, 학교 기준만을 상향하더라도 입법 목적 달성 곤란(외부 오염원 관리 및 규제 강화 병행 필요)
- 유해물질에 취약한 학생이 이용하는 학교의 환경위생 기준을 강화하면 취약학생의 재학여부에 따라 환경위생 관련 시설·설비 개선 등 조치가 필요하나, 이는 단기간에 조치하기 어려워 실현가능성이 낮고 학교 현장에 과도한 업무부담 유발 우려
- 아울러, 지역별 환경위생 기준 설정은 지역 내 공기질 기준 및 지역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사입법례(실내공기질 관리법)를 참고하여 시·도조례로 정할 필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③시·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해당 시·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시·도교육청⁴⁾: 신중검토

-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대기질 개선은 학교 규제가 아닌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 개정과 관계부처의 종합적인 오염원 관리 체계를 통해 해결

문 의 처

02)6788-5184

4)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제주